R&D

KIOSK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 길잡이

제82호 2021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 례

소개·····	2
Hot Issue	3
한걸음 더 · · · · · · · · · · · · · · · · · ·	6

R&D KIOSK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무료로 배포합니다.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KIOSK에 사용된 이미지를 상업적인 용도나 목적으로 재가공하실 수 없습니다. 기획 · 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조사 · 편집 · 디자인: 한국창의여성연구협동조합 TEL: 02-6215-1222 FAX: 02-6215-1221 www.koworc.kr info@koworc.kr

소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2021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범부처 연구개발 추진에 관한 공통 규정으로 2001년에 제정된 지 20여 년 만입니다. 지난 20년간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약 6조 원에서 약 27조 원으로, 연구개발사업 지원 부처 수는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습니다. 이 과정 에서 부처별·사업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복잡한 규정을 통합하여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개발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체계 변화 R&D 전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2001~) 과학기술진흥법 관리 법률 공동관리규정(2001~2020) (2021~)(1967~2001) 세부분야별 **기술개발촉진법**(1972~2011) R&D 관리 법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99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995~)** 추진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1995~) 우선 적용 새롭게 바뀌는 R&D 주요 절차 및 제도 보건의료기술진흥법(1996~) 농림식품 • 국가연구개발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양식과 절차가 통합. 과학기술육성법 간소화되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2009~)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상산업진흥법 (2009~)• 여러 개로 분산·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 연구자 정보, 과제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연구관리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국토교통과기법 • 연구윤리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도 범부처 기준으로 해양수산과기법

2 R&D Kiosk 제82호 2021년 3월

등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제재처분을 받은 대상자는 제3의 기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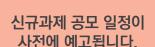
연구자권익위원회에 처분의 적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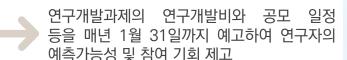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둘러보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로 총 5장 41개 조, 시행령, 시행규칙과 9개 행정규칙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연구비 사용. 평가. 보고서 제출 등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기획·예고·공모·신청

선정평가에 앞서 사전검토 절차가 신설됩니다.

신청자격.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부적합한 대상에 대한 평가 부담을 경감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수를 제한합니다. (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자 5개)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협약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 연구자 등 경미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통보만으로 협약 변경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연구개발과제의 보고 및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연차·단계·최종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각 보고서의 세부 내용과 제출기한을 제도화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의 연구개발기관 소유원칙이 정해집니다.

정부납부기술료 내용이 개선되어 성과를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이용하여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부 기술료를 납부합니다.

최대한도 : 정부 연구개발비의 일정 비율(중소 10%, 중견 20%, 대 40%)로 일원화 산출기준: 징수한 기술료 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 (중소 5%, 중견 10%, 대 20%)로 통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 표준화

국가연구개발 관리 서식 및 첨부서류가 표준화됩니다.

기존 136종 2,412개의 연구관리 서식을 54종으로 표준화

연구개발비 기준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Hot Issue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준이 정해집니다.

연구개발기관별로 정부가 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비율이 설정되고,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을 규정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연구개발비 사용용도가 공통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던 사업까지 포괄됩니다.

정부출연기관 기본 사업, 인문사회 분야 연구개발사업, 대학지원사업 등까지 범부처 공통규정에 포괄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부처별·사업별로 운영되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해 통일된 기준이 마련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을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으로 구분하여 사용

연구비 사용절차 등

연구개발비 사용절차와 관련된 행정부담이 경감됩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 으로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사전승인 사항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부처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부처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을 통보

이자의 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사용하거나 국고로 반납하게 됩니다.

전문기관이 연구개발비 지급업무를 대행하여 발생한 이자는 국고로 반납하지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정산부담 완화를 위해 정산 주기가 과제 종료 또는 단계 종료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연차정산을 폐지하고 단계별 또는 과제별 사용실정 보고

간접비 고시비율 결정

효율적인 연구개발비 사용과 연구지원 역량 제고를 위해 적정 규모의 간접비 비율이 설정됩니다.

영리기관은 간접비 고시비율을 10%로 하고,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간접비 계상기준 산출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산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특례)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인건비 지급체계가 마련됩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여러 과제의 학생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통합관리하며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특례)

연구과제단위로 관리되던 연구시설·장비비가 연구기관, 공동활용시설,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되도록 통합관리기관이 지정됩니다.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도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해짐

R&D Kiosk 제82호 2021년 3월



Po 국가연구개발 행정지원 체계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준 마련과 각 처리주체별 역할·의무 등이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으로 규정됩니다.

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통합Ezbaro, 통합RCMS 2개의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운영 중이었지만 앞으로는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부처·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연구지원시스템이 통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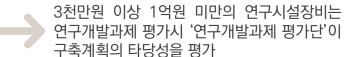
단일 형태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 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를 구축하여 2023년 말까지 전 부처 적용 예정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전문기관의 국가R&D사업이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됩니다.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 타당성 평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 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연구지원기준 및 연구지원체계평가 연구기관이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연구개발성과 창출·활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은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연구지원조직을 갖추고 연구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함

연구노트 작성·관리

연구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연구노트 작성·관리가 강화됩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의 범위가 확장되고, 연구현장의 자율적인 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윤리 확보 책임이 명확화됩니다.

연구윤리 확보



1회 처분 기준이 참여제한 10년·제재부가금 500%로 상한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재검토 기구인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됩니다.

제재처분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 제도혁신 체계

-0-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의견을 수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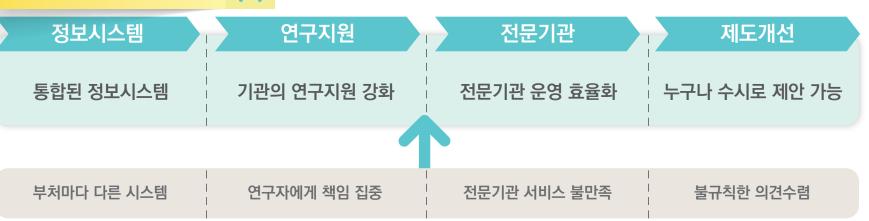
과기정통부에서는 매년 이해관계인·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체계를 상시화할 계획

한눈에 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통해 달라지는 모습

연구절차

공모 선정 연구비 현약 평가. 정산 역량, 계획 총액 위주 공모일정 협약변경 단계별 사전예고 중심 평가 기준 및 절차 확립 평가, 정산 관리 협약변경 기준 불확실 공모일정 불확실 10개 이상의 평가 항목 연차별 평가, 정산 물량×단가 관리

성실실패



연구윤리

제재한도

이의신청

성실 수행 시 제재 제외 참여제한 최대 10년 제3의 기관에서 검토

성실 수행 시 제재 감면 참여제한 최대 5년

제재한 부처에서 검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12.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개요 및 달라지는 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설명자료(안)".

R&D Kiosk 제82호 2021년 3월

